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06호
- 다. 제출일자 : 2018. 10. 17
- 라. 회부일자 : 2018. 10. 29

2. 제 안 사 유

-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준용
 - (1) 공개된 평가서 초안의 주민 의견 수렴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주민 등이 신청하면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9조)
 - (2) 평가서의 보완요청을 두 차례로 한정하여 협의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완 요청에 따른 협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환경영향평가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 가능(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
- (3)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건 정비 및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요건 신설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4)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협의절차 완료 전 사전공사 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고, 시장은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또는 요구하도록 요청(안 제20조 및 제21조)
 - (5)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환류기능 강화(안 제20조제9항)
 - (6) 사전공사 허용범위 마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7)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협의절차 완료 전 사전공사 시 받은 공사중지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

- (1) 변경협의 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절차 간소화
(안 제18조제2항)
- (2) 사업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가능 등(안 제27조)

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안 제10조)

라. 협의대상 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안 별표 1)

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과 조문을 일치시키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 8. 2. ~ 8. 22.) 결과: 별도 첨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임.
- 평가 대상사업은 연면적 10만 m^2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m^2 이상 30만 m^2 미만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 26개(별표 1 참고)이며, 평가절차는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 등 3단계로 시행되고 있음¹⁾.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등 60명²⁾으로 구성·운영하고 각 안전별 평가는 각 분야 전문가 15~16명을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음.

2)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 의견 수렴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1) 평가항목은 대기, 온실가스, 수질, 소음 등 6개 분야 20개 항목

2) 제9기 심의위원회 임기는 '18.9.11~'20.9.10(2년), 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장임.

대한 주민 의견 재수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은 없음.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예〉

| 개정사항 | | 「환경영향평가법」 |
|----------------------------|---|----------------------|
| 안 제9조 | 공개된 평가서 초안의 주민 의견 수렴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재수렴 절차 마련 | 제26조 |
| 안 제14조 | 평가서의 보완 요청을 두 차례로 한정하여 협의기간의 장기화 방지 | 제28조 |
| 안 제17조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건 정비 및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요건 신설 | 제32조 시행령 제54조 |
| 안 제20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환류 기능 강화 | 제36조 |
| 안 제21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 사전공사 허용범위 마련 | 제34조 시행규칙 제15조 |
|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34조 |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사전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 강화 및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제40조 제34조 제76조 |

3) 환경영향평가서 대행 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 (안 제10조)

-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당초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자연생태환경분야의 조사 등을 수행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른 평가서 등을 작성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한 주소지가 서울시인 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평가업자는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초 조례 제정시 환경부에 등록된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166개소 중 서울시 소재 업체는 99개소였으나,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의 이전 등으로 인해 2018년 3월 현재 26개소로 급감하였음.

- 따라서 안 제10조제1항과 같이 지역 제한 없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전체로 평가서 등 작성대행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선택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4)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 (안 제18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 안 제18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를 준용하여 조명을 변경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며,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³⁾」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을 준용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에 있음.
-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행 절차는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의견수렴 등), 평가서본안(심의의결)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⁴⁾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심의의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조례 제27조제1항에서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제29조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물 사업의 특성 고려

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5)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27조제1항제1호는 현행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요청 대상 사업 범위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1호6)를 준용하여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조례 개정으로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절차 면제 요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협의절차 면제 심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제시된 '각 호의 모두에 해당(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27조제1항을 수정⁷⁾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5) 평가 대상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범위 명확화(안 별표1)

- 현행 별표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사업에 대한 범위(규모) 산정은 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합계가 10만 m^2 이상인

5) 제29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항목 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 및 현장조사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그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에서도 약식절차(협의절차 면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시한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서 공동주택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오해와 혼란⁸⁾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동일한 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공동주택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음.

- 따라서 안 별표 1은 건축물 사업에 대한 범위 산정시 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것을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례 해석상의 오해와 혼란, 대상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발사업 사례 비교·검토〉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면적 및 연면적 등 사업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구 분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
|---------|-------------------|------------------|
| 사 업 면 적 | 55,153㎡ | 27,341㎡ |
| 연 면 적 | 183,677㎡ | 132,964㎡ |
| 용 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근생, 판매시설 등 |
| 환경영향평가 | X | ○ |
| 건축심의 | ○(연면적10만㎡/21층 이상) | ○ |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3만/4.5만㎡ 이상) | ○ |
| 친환경에너지 | 5%(녹색건축물설계기준) | 16% |

다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단독 및 공동주택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그 건수가 크게 증가되고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전문기관 검토 수당 등의 증가가 예상됨.

8) 실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접수된 사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예산안은 대상 사업 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5%인 6천만원⁹⁾을 편성하고 있지만, 향후 해당 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조문을 일치시키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9) 동 조항은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예산은 6개월 증가분을 반영한 것임.